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1. 12. 11
시민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11. 30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1. 11. 30.

다. 상정일자 : 제84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위원회(2001.12.11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귀식 산업위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는 이사의 수를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정관이 아닌 조례에서 그 수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자율권 확대 및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현행 조례에서는 이사 정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부합되도록 이를 삭제함.(안 제7조제1항)

3. 근거법령

o 지방공기업법(1999.1.29 법률제5708호)제58조 제1항

o 지방공기업법시행령(1999.3.31 대통령령제16213호)제55조 제1항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동 조례(안)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제1항에서 "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, 이사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"를 "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,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"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이는 지방공기업법(1999.1.29 법률제5708호) 제58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김유현 위원) : 처음 조례 제정시 "감사 및 이사는 5인으로 정한다."로 하였으나 개발공사 사업확대로 인하여 이사를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이 아닌가 ?

○ 답변요지(박귀식 산업위생과장) :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며 사업의 확장에 따라 이사, 감사의 정수를 .자율권을 주기 위함.

○ 질의요지(김유현 위원) : 입법예고 기간과 예고 게시는 ?

○ 답변요지(박귀식 산업위생과장) : 2001.11.15~11.26(11일간)이며, 구보 및 구게시판에 게시하였음.

○ 질의요지(박영길 위원) : 상근이사를 증원하기 위함이 아닌가 ?

○ 답변요지(박귀식 산업위생과장) : 장래를 볼 경우 이사 수를 늘일수도 있으나 현 조례를 우리구 고문 변호사와 법제팀과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이 있음.

○ 질의요지(박영길 위원) : 개발공사 정관의 변경 절차는 ?

○ 답변요지(박귀식 산업위생과장) : 이사회의 의결후 우리구 기획예산과, 산업위생과의 검토후 구청장이 인준함.

○ 질의요지(한대운 위원) : 현 조례가 문제점은 있었음. 개발공사를 처음 만들 때 조례가 아니면 이사의 수를 5인 이내로 규제할 수 가

없었음. 상근이사가 많으면 경영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.

- ○ 답변요지(최승범 생활복지국장) :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.
- ○ 질의요지(조영천 위원) : 현재 개발공사 상근이사는 몇 명인가 ?
- ○ 답변요지(박귀식 산업위생과장) : 1명임.
- ○ 질의요지(조영천 위원) : 거주자우선주차제, 마포문화체육센터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근이사의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?
- ○ 답변요지(박귀식 산업위생과장) : 지적한 사항이 맞는 점도 있음.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2001.
제 출 자 :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는 이사의 수를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정관이 아닌 조례에서 그 수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지방공기업의 자율권 확대 및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2. 주요 골자

- 현행 조례에서는 이사 정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부합되도록 이를 삭제함.(안 제7조제1항)

3. 개정 근거

(1) 지방공기업법(1999.1.29 법률 제5708호) 제58조제1항
(2) 지방공기업법시행령(1999.3.31 대통령령 제16213호) 제55조제1항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(2001.11.15~11.26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(2)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,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임원)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, 이사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. ②(생 략)	제7조(임원)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 ②(현행과 같음)